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무의 처리에 문제가 없는 사무의 경우에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축설비설치확인서

| | | | | | | |
|----------------|------------|-----|--|------|--|-----|
| 1. 일반 사항 | 건축물 개 요 | 소재지 | | | | |
| | | 용 도 | | 연면적 | | 층 수 |
| | 시공자 | 성 명 | | 면허번호 | | |
| | | 상 호 | | 주 소 | | |

| | 구 분 | 확인의견 | 확인일자 |
|----------------|---------------|------|------|
| 2. 확인 사항 | 급 수 · 급 탕 설 비 | | |
| | 배 수 · 통 기 설 비 | | |
| | 배 관설비(급배수) | | |
| | 위 생 기 구 설 비 | | |
| | 열 원 기 기 설 비 | | |
| | 공기조화기기설비 | | |
| | 덕 트 설 비 | | |
| | 배관설비(공기조화) | | |
| | 냉 방 설 비 | | |
| | 난 방 설 비 | | |
| | 배관설비(냉난방) | | |
| | 가 스 설 비 | | |
| | 소화 및 배연설비 | | |
| | 오물처리 설비 | | |
| | 승강기(기계부문) | | |
| | 승강기(전기부문) | | |
| | 전 기 설 비 | | |
| | 피뢰침 설비 | | |
| 기 타 사 항 |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 기술사 확인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 | | | |
|-------|-----------|-----|--------|
| 확인자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인) | 자격번호 : |
| | 발송배전기술사 | (인) | 자격번호 : |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인) | 자격번호 : |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인) | 자격번호 : |
| | 가스기술사 | (인) | 자격번호 : |

건축주 · 공사감리자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 설치시 매립·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건축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를 선택하여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설비 설치를 협력할 수 있는 기술사에 건축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4. 27.

|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록예정기준지 | 근거규정 | 수반취득 |
|-----|------------|----|-------|---------------------------------|---------|-----------------|
| 박상걸 | 1950.05.21 | 남 | 중 국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1로 46 | 국적법 제5조 | |
| 인팅팅 | 1986.12.05 | 여 | 중 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109 | 국적법 제5조 | 수반취득 (위안샤오매) |
| 송영매 | 1976.08.10 | 여 | 중 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80번길 20 | 국적법 제5조 | 수반취득 (김혜령) |
| 왕천보 | 1947.01.29 | 남 | 타 이 완 |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60-3 | 국적법 제5조 | |
| 이계자 | 1947.10.19 | 여 | 타 이 완 |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60-3 | 국적법 제5조 | |
| 근운학 | 1950.04.19 | 여 | 타 이 완 |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4-15 | 국적법 제5조 | |
| 김춘선 | 1980.04.09 | 여 | 중 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730-27 | 국적법 제5조 | |
| 백대봉 | 1945.09.16 | 남 | 중 국 |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1길 14-2 | 국적법 제5조 | |
| 김인영 | 1980.08.19 | 남 | 중 국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70 | 국적법 제5조 | |
| 허인옥 | 1956.07.26 | 여 | 중 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801번길 26-64 | 국적법 제5조 | |
| 김대승 | 1979.10.15 | 남 | 중 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진로 45-3 | 국적법 제5조 | |
| 한자철 | 1972.06.27 | 남 | 중 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21 | 국적법 제5조 | 수반취득 (한혜림) |
| 권오창 | 1956.11.26 | 남 | 중 국 |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 국적법 제5조 | |
| 최성립 | 1985.02.18 | 남 | 중 국 | 경기도 평택시 비전로64번길 19 | 국적법 제5조 | |
| 조영자 | 1944.04.27 | 여 | 중 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68 | 국적법 제5조 | |
| 김정실 | 1962.12.09 | 여 | 중 국 |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18번길 51 | 국적법 제5조 | |
| 장명수 | 1970.04.10 | 남 | 중 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13-1 | 국적법 제5조 | |
| 구어정 | 1965.09.22 | 남 | 중 국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죽고개로1나길 11 | 국적법 제5조 | |
| 호양 | 1978.11.20 | 남 | 베 트 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09 | 국적법 제5조 | 규지,프영비,풍웬 |
| 태명숙 | 1955.04.13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4길 17 | 국적법 제5조 | |